한국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채용 공고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한국감정원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능력중심 채용으로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분 야		채용예정인원
주택·상가건물	변호사	서울지역	3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춘천지역	1명
		전주지역	2명
합 계			6명

- * 근무지역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장소('20.11월 : 서울, 춘천, 전주, '21년중 : 고양, 세종, 포항) 및 운영상황 등에 따라 배치 조정 가능
- ※ 직무는 별첨1 NCS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 분야(근무지)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2 채용형태

- o (채용직군) 전문계약직
- o (계약기간) 5년
 - * 단, 계약기간 만료 도래 시 임용권자(기획경영본부장)는 근무성적평정 등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3 지원자격

- ㅇ 공고일 기준「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별첨2 참조)
-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4 우대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구 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만점의 3,5,10%	만점의 3,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만점의 3%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만점의 3%	_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만점의 3%	-

-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점부여
- ※ 기준 시점은 공고일 기준이며,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 자격 관련 우대사항

자 격	서류전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만점의 2%

[※] 기준 시점은 공고일 기준

□ 우대사항 적용

o 전형별로 상기 항목별(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단, 항목 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9. 9(수) ~ 2020. 9. 24(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ㅇ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 접수마감일은 지원자가 집중되어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지원 요망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o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증빙자료 등 채용서류는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하는 기한 내에 제출
-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자료 확인 후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6 전형방식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전형 → ③ 신체검사 → ④ 최종합격자 결정

* 신체검사 합격자 대상으로 신용조회 및 신원조회 실시 예정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 평가(100점 만점)

구 분	내 용			
저ᄀᅼᄾᆝᄾᆝ	- 채용공고문 상 지원자격 심사 후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			
적격심사	- 입사지원서 부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역량평가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 평가기준 : 학교교육(50), 직업교육(20), 자격증(10), 직무적합도(20)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 및 자기소개서 부실 작성자 감점 적용			

- o (심사대상) 입사지원서
- ㅇ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 역량평가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o (동점자처리)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② 면접전형

- 이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o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100점 만점)

구 분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능력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o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결정
 - * 단,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 o (동점자처리) 동점자 발생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 분	상 세 기 준		
1순위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고득점자		
2순위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 → 발전가능성 → 창의성		
2군귀	→ 필요기술 → 필요지식 순서별 고득점자		

③ 신체검사

- ㅇ (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 o (전형방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판정보류로 분류)
 - * 미제출자는 불합격으로 간주하며, 판정보류자의 경우 별도 기한 내 합격 판정서 제출기회 부여

4 최종합격자 결정

- ㅇ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에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복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취소

7 전형일정

연번	내 용	일 자
1	채용공고	9.9(수)
2	입사지원서 접수	9.9(수) ~ 9.24(목)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7(수)
4	면접전형	10월 중순
5	신체검사 및 서류제출	10월 중순 ~ 10월 말
6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10월 말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변경 등의 안내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www.kab.c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공고

8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 이후에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제출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 **제출시기**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별도 기한 내

* 제출서류 누락 시 최종합격자 발표 前일 정오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공통)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준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 (예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변호사 자격증 등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제출서류(해당자)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준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각 1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임을 증빙하는 증명서 (부모의 출신국적 표기) 1부
- •전역예정증명서 1부 (군 복무 중인 자)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학교교육, 직업교육) 이수내역 증빙자료(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각 1부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내역(학교교육, 직업교육) 포함 필수
-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수료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자료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2급 이상 인증서 1부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격증(합격증 포함) 또는 등록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입사지원서상 경력사항 입력자 필수제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분)로 대체 가능
- * 원본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자격증, 수료증 등)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9 근로조건

□ 근무지역 및 근로시간

구 분		근무지역*	근로시간
	서울지역	서울특별시 근무	즈도이
심사관*	춘천지역	강원도 춘천시 근무	TJ2,
	전주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근무	1일 8시간 근무

* 근무지역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장소('20.11월 : 서울, 춘천, 전주, '21년중 : 고양, 세종, 포항) 및 운영상황 등에 따라 배치 조정 가능

□보수

구 분	보수수준
심사관 (전문계약직)	연봉 51,000,000원 내외 [*]

* 상여금 포함된 금액이며. 시간외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은 별도 지급

10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안전한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신분확인 시간 제외)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전형에 응시하여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 별로 상세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형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력될 경우 각 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서류: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청구방법: 채용서류반환청구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k25720@kab.co.kr)으로 제출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중 1개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신용조회 및 신원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자 : 채용전형 불합격자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k25720@kab.co.kr)으로 제출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입사유예는 불가능 합니다.(입사예정일 미 출근 시 입사포기로 간주)
- □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 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국감정원 채용관리요강>

- 제17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3. 채용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행위
 - 4. 그 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부정행위를 통해 부정합격한 사람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신고방법: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12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관리부 채용담당자(☎053-663-830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9.



별첨1

NCS 기반 직무기술서

□ 변호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5.법률·경찰· ₋	소방·교도·국방	01.법률	01.법무	NCS 미개발 직무(세분류)로 별도 분석을 통해 내용 도출
한국감정원 주요사업	ㅇ부동산 가격 ㅇ부동산 조사 ㅇ부동산 및 경	•	ㅇ도/	약관리 및 보상수탁사업 시재생사업 및 녹색건축 동산 R&D 및 정책지원
능력단위	o 법률검토, 법률상담, 사건처리, 민원상담 등			
직무수행내용	o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법률상담, 조정신청의 접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원 안내,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결정			부자 결정
일반요건	연령,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전공	학력, 전공 무관		
필요지식	o 헌법·행정법·상법·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법률 지식, 판례 및 법이론, 소송 관련 기본지식, 부동산 관련 기본지식 등			
필요기술	o 법률정보검색 및 활용능력, 법령 해석 및 사례 적용 능력, 법적 쟁점 파악 및 법률적 사고를 통한 해결방안 도출 능력 등			
직무수행태도	o 문제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자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자세, 문제 상황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분석하는 자세 등			
필요자격	ㅇ 공고일 기준「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직업기초능력	o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참고사이트	o www.ncs.go.kr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